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7회 임시회(2024. 3. 1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4-42
----------	-------

2024. 4. 15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강동오 의원 외 5명
- 나. 제 안 일 : 2024. 4. 2.
- 다. 회 부 일 : 2024. 4. 3.

2. 제안이유

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발굴·조성하는 등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국민건강증진법
 - 2)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 : 입법예고 : 2024. 3. 26. ~ 2024. 4. 2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맨발 걷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확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,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(안 제4조),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 등으로 분칙 5개와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1조 ~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이라는 효용성을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정당성을 명시하고 ‘맨발 걷기’와 ‘맨발 보행로’의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.
-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 ~ 안 제5조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은 사업의 방향성과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, 보행로의 설치 및 보수,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맨발 걷기가 심신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보행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- 이 같은 주민의 관심도를 증명하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보행로 확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,

- 관계 법령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‘공원 시설’로서 ‘맨발걷기길’을 운동시설로 정의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.
- 마포구에서도 현재 성미산 황토길을 운영하고 있으며, 와우근린공원과 삼개·도화소어린이공원에 황토길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음.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¹⁾과 「지방자치법」²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장려 차원의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조문 체계 등 입법 내용의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맨발 보행로의 대표적인 황토길 시설사업은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유실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.

전문위원	신 준 호
주무관	박 철 호

1)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2) 지방자치법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[관 계 법 령]

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

제22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)

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2.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
3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